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3회 임시회(2019. 9. 25.)

서울특별시마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복지도시위원회

전문위원 신준호

서울특별시마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19-128
----------	--------

2019. 9. 25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정혜경 의원 외 3인
- 나. 제 안 일 : 2019. 9. 17.
- 다. 회 부 일 : 2019. 9. 17.

2. 제안이유

「지역보건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하고 조례 조문의 일본식 한자어를 법령 내용에 맞게 고유어나 쉬운 말로 바꾸어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규정 준수 및 위원회 “설치” 를 위원회 “구성” 으로 개정
- 나. 조례의 목적 중 일부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간결하고 명확한 조문으로 개정(안 제1조)
- 다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용어 및 표현 정비
(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8조, 안 제9조, 안 제12조, 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2019. 9. 11.~ 9. 16.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본 개정조례안은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 및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기타 조문의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명확히 표현하고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정(안 제1조)
-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른 기타 조문 띄어쓰기 반영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역보건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‘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조례의 제명 및 주요 조문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 맞지 않는 표현을 개정하는 등,
-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[관 계 법 령]

「지역보건법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·연구, 정보의 수집·관리·활용·보호, 인력의 양성·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)

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하며, 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

제3조(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

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